인도 투자 펀드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원천국 싱가포르

2000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인도의 지분형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7,877억 2,000만 미국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가 24.72%를 차지하여 모리셔스(23.71%), 미국(10.39%), 네덜란드(7.19%), 일본(6.11%)을 앞섰습니다.[1] 싱가포르발 누적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상공부 산하 신탁인 인도 브랜드 에쿼티 재단(India Brand Equity Foundation)의 한 페이지는 1,926억 8,000만 미국달러라고 하는 반면, 다른 페이지는 1,946억 8,000만 미국달러라고 합니다.[2] 그 차이는 작으며 아마도 오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7,877억 2,000만 달러의 24.72%는 약 1,947억 달러에 해당하므로 더 높은 수치가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국내무역진흥부(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2000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기간에는 모리셔스가 유입액의 32.81%, 싱가포르가 16.30%를 차지했습니다.[3] 그 후 10년 동안 펀드매니저들이 더 많은 실체, 더 깊은 금융서비스 부문, 그리고 앞서 설명한 조약상 지위를 제공하는 관할권으로 플랫폼을 옮기면서 싱가포르가 모리셔스를 앞질렀습니다. 연간 수치는 현재 흐름의 규모를 보여 줍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다. 2025–26 회계연도에 인도가 받은 지분형 외국인직접투자는 588억 4,000만 미국달러였으며, 그중 약 3분의 1인 198억 미국달러가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4]

이에 비해 양자 무역은 규모가 작습니다. 2025–26 회계연도의 교역액은 361억 미국달러였으며, 인도의 수출은 118억 6,000만 미국달러,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은 242억 4,000만 미국달러였습니다.[5] 따라서 두 나라의 관계는 무엇보다 금융적인 관계입니다. 상품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와 세계 사이를 오가지만, 인도로 향하는 자본은 주로 하나의 경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펀드매니저들이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이유

인도 투자 플랫폼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하며, 그중 인도에 특유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는 조약입니다. 그 혜택제한 조항은 실제 지출에 보상을 주고, 기득권 보호는 과거의 보유분을 보호합니다. 둘째는 제E편 제V장에서 설명하는 펀드 운용 규제 체계입니다. 여기에는 MAS의 라이선스, 풍부한 펀드 관리회사, 수탁기관, 감사인 및 변호사 인력, 그리고 제E편 제IV장에서 엄브렐러 펀드의 수단으로 검토하는 가변자본회사(Variable Capital Company, VCC)가 포함됩니다. 셋째는 제E편 제III장에서 분석하는 194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 Section 13O 및 13U에 따른 펀드 과세 제도입니다. 넷째는 시간대와 근접성입니다. 싱가포르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뭄바이보다 2시간 30분 앞선 시간대에서 일하며, 뭄바이나 벵갈루루까지 짧은 비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요소는 법률적인 것입니다. 인도 투자에 관한 주주간계약은 흔히 싱가포르법이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을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회부합니다. 제F편 제II장에서 보듯이, 인도 당사자들은 여러 해 동안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가장 큰 외국인 이용자 집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인도 자산을 보유하는 펀드는 싱가포르의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배구조, 싱가포르의 분쟁 해결 및 인도의 사업 운영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들이 인도 법원의 지연과 결부시키는 위험을 줄여 줍니다.

포트폴리오 자본도 같은 경로를 따릅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 등록된 싱가포르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인도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국가별 집단 가운데 하나를 이룹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인도 기업의 해외상업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의 최대 원천 가운데 하나입니다.[6] 제C편 제IV장에서 그 기원을 1968년으로 추적하는 아시아달러 시장에서 인도 기업에 대한 대출의 상당 부분은 싱가포르에서 계상됩니다.

국가 자본: 테마섹과 GIC

싱가포르의 두 국가 투자기관은 그 자체로 인도의 최대 투자자에 속합니다. 테마섹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포트폴리오의 7%를 인도에 대한 기초 익스포저로 보고했습니다. 테마섹의 인도 투자 역사는 금융서비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ICICI 은행 지분 5.2%를 취득했고 2007년까지 지분을 8.3%로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 마니팔 헬스 엔터프라이즈(Manipal Health Enterprises)의 과반 지분을 취득했고, 2025년 3월에는 스낵 제조업체 할디람스(Haldiram's)의 지분 10%를 약 10억 미국달러에 취득했습니다.[7] 앞서 다룬 풀러턴 사건은 테마섹의 지주회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GIC는 인도의 상장 주식, 인프라, 부동산 및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지만, 이에 견줄 만큼 상세한 국가별 배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두 기관에 대해서는 제D편 제I장에서 설명합니다.

국가 자본은 이 회랑에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테마섹과 GIC가 실제 인력과 실제 의사결정을 갖춘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투자할 때, 그들은 싱가포르 경로가 진정한 투자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사모펀드, 벤처캐피털과 인도 창업자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 산업은 상당 부분 싱가포르에서 운용됩니다. 국제 운용사들은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인도 전략을 운영하며, 인도 운용사들은 인도에 등록된 국내 대체투자펀드와 함께 싱가포르에 소재한 역외 펀드를 조성합니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해 또는 싱가포르 펀드 기구에서 직접 투자하며, 뭄바이나 벵갈루루의 투자자문사가 자문계약에 따라 리서치를 제공합니다.

인도 창업자들은 같은 통로를 반대 방향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2010년대에 많은 인도 스타트업이 모회사를 싱가포르에 두었습니다. 외국 벤처 투자자들이 익숙한 관할권을 선호했고, 임직원 주식 제도와 우선주 구조를 그곳에서 더 쉽게 시행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해외 상장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대 초부터는 반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한 인도 증권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세금 비용을 감수하면서 본점 소재지를 인도로 다시 옮긴 것입니다.[8] 이러한 움직임은 싱가포르 통로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 통로는 인도 국내 구조가 아직 제공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존속하며, 그 이점이 사라지는 곳에서는 축소됩니다.

제약 요인: 간접양도와 실질적 소유

이 회랑은 인도법이 부과하는 제약 아래에서 운영됩니다. 인도는 2012년부터 인도 자산의 간접양도, 즉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인도 자산에서 비롯되는 외국 회사의 매각에도 과세해 왔습니다. 보다폰(Vodafone)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뒤이은 이 규정의 소급 적용은 의회가 2021년 소급 효력을 철회할 때까지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도의 평판을 손상시켰습니다.[9] 투자자들은 흔히 싱가포르 회사 자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엑시트하므로, 싱가포르 지주회사는 이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두 번째 제약은 자금의 출처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4월 인도는 인도와 육상 국경을 접한 국가로부터의 투자를 정부의 사전 승인 대상으로 했습니다.[10] 이 규정은 투자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러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11] 따라서 중국 투자자가 있는 싱가포르 펀드는 인도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자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편 제II장은 싱가포르를 거치는 중국 자본의 흐름을 설명하며, 이 규정은 목적지가 인도인 경우 그러한 흐름을 특별한 심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

1.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ibef.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0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분형 FDI 총 유입액 Rs 52,85,866 crore(7,877억 2,000만 미국달러); 싱가포르 24.72%(1,926억 8,000만 미국달러), 모리셔스 23.71%(1,867억 6,000만 미국달러), 미국 10.39%, 네덜란드 7.19%, 일본 6.11%. ↩

2.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India-Singapore Trade”(ibef.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2000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with a cumulative FDI inflow of US$ 194.68 billion’(누적 FDI 유입액 1,946억 8,000만 미국달러로) 인도의 최대 투자국. ↩

3. Wikipedia, “India–Mauritius relation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0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도의 주요 FDI 원천국: 모리셔스 약 1,017억 6,000만 미국달러 또는 32.81%, 싱가포르 16.30%, 영국 7.76%, 일본 7.66%, 미국 6.25%. ↩

4.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ibef.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6 회계연도 지분형 FDI 유입액 588억 4,000만 미국달러;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India-Singapore Trade”(ibef.org): 싱가포르발 지분형 FDI 유입액은 2025 회계연도 149억 4,000만 미국달러, 2026 회계연도 198억 미국달러. 약 3분의 1이라는 비중은 저자의 계산임.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5.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India-Singapore Trade”(ibef.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6 회계연도 양자 교역액 361억 미국달러; 인도의 대싱가포르 수출 118억 6,000만 미국달러; 수입 242억 4,000만 미국달러; 인도는 싱가포르 전체 교역의 2.96%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의 6대 교역 상대국. ↩
6.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India-Singapore Trade”(ibef.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해외상업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의 최대 원천 가운데 하나이며, 싱가포르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인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
7. Wikipedia, “Temasek Holding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국가별 기초 익스포저 ‘7% India as at 31 March 2026’(2026년 3월 31일 기준 인도 7%); 2003년 12월 ICICI 은행 지분 5.2% 취득, 2007년까지 8.3%로 확대; 2023년 4월 마니팔 헬스 엔터프라이즈 지분 41% 추가 취득을 발표하여 총 59%; 2025년 3월 할디람스 지분 10%를 10억 미국달러에 취득. ↩
8. 2021년경부터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인도 스타트업의 ‘리버스 플리핑(reverse flipping)’(예: PhonePe, Groww)에 관해서는 Economic Survey of India 2024–25의 보고 및 언론 보도 참조. ↩
9. Finance Act 2012(*Vodafone International Holdings BV v Union of India*, 인도 대법원, 2012년 1월 20일 판결 이후 Income-tax Act 1961 section 9(1)(i)의 소급 개정); Taxation Laws (Amendment) Act 2021. ↩
10. Wikipedia,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d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0년 4월 인도는 FDI 정책을 변경하여 인도와 육상 국경을 접한 국가로부터의 투자를 심사하도록 함. ↩
11.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Press Note 3 (2020 Series), 2020년 4월 17일, Consolidated FDI Policy 제3.1.1항 개정(인도와 육상 국경을 접한 국가의 법인, 또는 그러한 국가에 소재하거나 그 국가의 시민인 실질적 소유자가 있는 법인의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 경로).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